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Part 1

어린이제품의 이해



- 01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이란?
- 02 위해도에 따른 제품 분류
- 03 어린이제품의 구분
- 04 어린이제품 확인 방법

01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이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은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의 제품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 건강의 유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법 제1조).

[제품 위해도에 따른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관리 품목 및 분류]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 적합성 확인
어린이의 생명 및 신체에 대한 위해, 재산상 피해 우려가 큰 어린이제품	제품 검사로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어린이제품	안전인증 및 안전확인 대상 어린이제품을 제외한 어린이제품
4개 품목 ① 어린이용 물놀이 기구 ② 어린이 놀이기구 ③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 ④ 어린이용 비비탄총	16개 품목 ① 유아용 섬유제품 ②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③ 어린이용 스포츠 보호용품 ④ 어린이용 스케이트 보드 ⑤ 어린이용 이단침대 ⑥ 완구 ⑦ 유아용 삼륜차 ⑧ 유아용 의자 ⑨ 어린이용 자전거 ⑩ 학용품 ⑪ 보행기 ⑫ 유모차 ⑬ 유아용 침대 ⑭ 어린이용 온열팩 ⑮ 유아용 캐리어 ⑯ 어린이용 스포츠용 구명복	14개 품목(개별 안전기준 有) +기타 어린이제품(개별 안전기준 無) ① 어린이용 가죽제품 ② 어린이용 안경테(선글라스 포함) ③ 어린이용 물안경 ④ 어린이용 우산 및 양산 ⑤ 어린이용 바퀴달린 운동화 ⑥ 어린이용 러스케이트 ⑦ 어린이용 스키용구 ⑧ 어린이용 스노보드 ⑨ 쇼핑카트 부속품 ⑩ 어린이용 장신구 ⑪ 어린이용 킥보드 ⑫ 어린이용 인라인 러스케이트 ⑬ 어린이용 가구 ⑭ 아동용 섬유제품 +α(개별안전기준은 없으나 공통안전기준을 따르는 어린이 제품)

※ 어린이제품 제외 대상

-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주(主) 사용대상으로 설계되지 않은 제품
- 일반용도 제품(전 연령대상 제품), 전문가용 또는 특수목적용 제품
- 타법에서 관리하는 품목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



의료기기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화장품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화장품



식품위생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기구
제2조
제5호에
따른 용기 포장



관광진흥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유기시설
유기기구

02 위해도에 따른 제품 분류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은 안전관리대상 제품을 위해도에 따라 ①안전인증 ②안전확인 ③공급자 적합성확인 3단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03 어린이제품의 구분

어린이제품이란 만 13세 이하 어린이를 주대상으로 설계되어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기 위한 제품입니다.

- 여기서 “사용하기 위한”이란 정상사용 및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사용을 통해 어린이가 물리적으로 해당 제품과 상호 접촉하는 것을 뜻합니다.
- 즉,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제품이나, 어린이와 성인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일반용도 제품은 어린이를 주대상으로 설계되지 않아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대상 제품이 아닙니다.
- 다만, 성인이 사용하는 일반용도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어린이제품의 결정요소에 해당되는 특징이 있고, 최소 사용연령이 만 13세 이하로 설계된 제품이면 어린이제품으로 간주 됩니다.
- 또한 어린이제품으로 오용할 가능성(동일한 제품군에 성인제품과 어린이제품이 혼재)이 있으나, 어린이 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어린이제품이 아님을 명확히 표시(“성인을 위한 것”, “어린이용이 아님”, “14세 이상 사용가능” 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표시가 없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어린이제품으로 간주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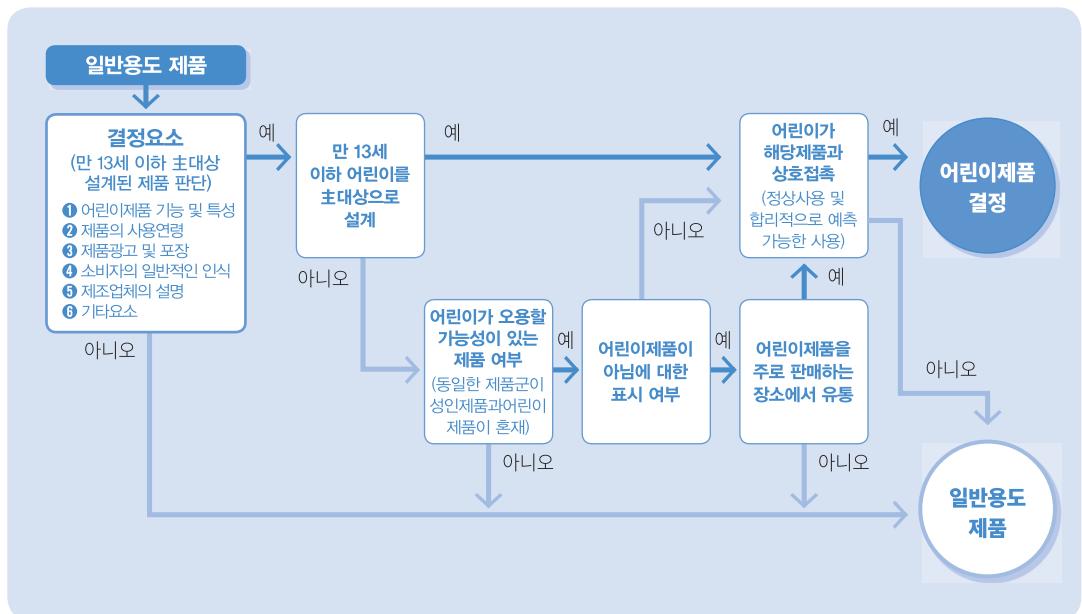


[어린이제품을 판별할 수 있는 결정요소]

결정요소	비고
어린이제품의 기능 및 특성	① 일반 성인에게는 불편한 정도의 작은 크기 ② 제품의 사용을 단순화하는 과정된 기능(대형버튼, 밝기표시기) ③ 성인 대상의 유사 제품에는 없는 안전 기능 ④ 일반적으로 어린이제품과 관련된 색상(빨강, 파랑, 밝은 원색들) ⑤ 일반적으로 어린이 제품과 관련된 장식이나 그림, 패턴 등 (만화 캐릭터, 동물, 벌레, 소형차량, 알파벳, 인형, 광대, 강아지 등) ⑥ 제품의 용도와는 관련 없이 어린이의 관심을 끌기 위한 기능 (캐릭터를 이용한 제품)
제품의 사용연령	신체치수, 운동, 인지 및 감각 발달 특성을 고려하여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적절한 연령 및 사용자 그룹 판단
제품광고 및 포장	제품이 어린이가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포장, 진열, 홍보, 광고 등의 여부
소비자의 일반적인 인식	제품이 어린이에 의해 사용되는 것으로 소비자가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는지 여부
제조업체의 설명	제조업자의 설명서, 제품의 표시라벨을 통해 어린이제품 여부 결정
기타 요소	가격, 어린이를 위한 공간에 디자인, 설계되었는지 여부

[어린이제품 대상 여부의 판단 및 결정 과정]

결정요소를 통해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사용대상으로 하여 설계된 어린이제품인지를 고려한 뒤, 어린이제품 정의 및 범위에 해당 여부를 통해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인 “어린이제품”을 결정합니다.



[어린이제품 결정을 위한 체크리스트]

다음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의 「어린이제품 가이드라인」에 있는 ‘어린이제품 결정을 위한 체크리스트’입니다. 다음을 통하여 어린이제품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1단계 - 결정요소를 통해 어린이제품으로 고려 될 수 있는지를 확인한다.

1.1 기능 및 특성	1.1.1 일반 성인에게는 불편할 정도의 작은 크기 입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1.1.2 제품의 사용을 단순화하는 과장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1.1.3 성인 대상의 유사 제품에는 없는 안전장치가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1.1.4 일반적으로 어린이제품과 관련된 색상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빨강, 파랑, 밝은 원색들)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1.1.5 일반적으로 어린이제품과 관련된 장식이나 그림, 패턴 등을 사용하였습니까? (만화 캐릭터, 동물, 벌레, 소형차량, 알파벳, 인형, 광대, 강아지 등)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1.1.6 제품의 용도와는 관련 없이 어린이의 관심을 끌기위한 기능이 있습니까? (캐릭터를 이용한 제품)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1.2 제품의 사용 연령	1.2.1 어린이의 신체치수, 운동, 인지 및 감각 발달 특성을 고려하여 제품의 사용에 따른 사용그룹을 판단했을 시 적정 사용연령이 만 13세 이하 입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1.3.1 포장의 문구, 그림이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1.3.2 어린이제품을 주로 판매하는 장소나 어린이제품 판매 구역에 진열되어 판매되고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1.3 제품광고 및 포장	1.3.3 홍보시 소비자가 제품을 사용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 대상이 어린이 입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1.3.4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광고매체를 사용했습니까? (예 : 어린이 채널, 어린이제품 판매몰 등)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1.4 소비자의 일반적 인식	1.4.1 어린이에 의해 사용되는 것으로 소비자가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습니까? (☞ 아래 자료가 있을 경우 체크)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판매자료	<input type="checkbox"/> 시장분석 자료
	<input type="checkbox"/> 마케팅 자료	<input type="checkbox"/> 연령 그룹 자료

<p>1.5 제조 업체의 설명</p> <p><u>1.5.1</u> 표시라벨이 어린이를 대상으로 작성되어 있습니까? (예 : 사용연령)</p> <p><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p> <p><u>1.5.2</u> 사용 설명서가 어린이를 대상으로 작성되어 있습니까?</p> <p><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p> <p><u>1.5.3</u> 조립 매뉴얼 등이 어린이를 대상으로 작성되어 있습니까?</p> <p><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p>	
<p>1.6 기타 요소</p> <p><u>1.6.1</u> 동일 제품군 대비 다른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습니까?</p> <p><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p> <p><u>1.6.2</u> 어린이를 위한 공간에 디자인되거나 설계된 제품 입니까? (예 : 어린이 집, 가정 내 어린이 방 등)</p> <p><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p>	
<p>어린이제품 고려 여부 확인</p> <p>1개 이상 해당될 경우, 어린이제품으로 고려 될 수 있으며, 2단계를 실시한다.</p>	
<p>2단계 - 어린이제품 정의 및 범위에 해당 여부를 통해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 “어린이제품”을 결정한다.</p>	
<p>2.1 주대상 확인</p> <p><u>2.1.1</u> 만 13세 이하 어린이를 주대상으로 설계 되었습니까? (최소 사용 연령이 만 13세 이하의 제품(예 : 8세 이상~성인 등) 포함 됨)</p>	<p><input type="checkbox"/> 예 → (2.3.1 진행)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2.2.1 진행)</p>
<p>2.2 옹용 가능성 확인</p> <p><u>2.2.1</u> 어린이제품으로 오용할 가능성이(동일한 제품군에 성인제품과 어린이제품이 혼재) 있는 제품입니까?</p>	<p><input type="checkbox"/> 예 → (2.2.2 진행)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3.2 진행)</p>
<p><u>2.2.2</u> 어린이제품이 아님에 대한 표시가(“성인을 위한 것”, “어린이용이 아님”, “14세 이상 사용가능” 등) 있습니까?</p>	<p><input type="checkbox"/> 예 → (2.2.3 진행)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2.3.1 진행)</p>
<p><u>2.2.3</u> 어린이제품을 주로 판매하는 장소(예 : 완구 상점, 대형 쇼핑센터의 어린이제품 판매 구역 등) 유통을 하고 있습니까?</p>	<p><input type="checkbox"/> 예 → (2.3.1 진행)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3.2 진행)</p>
<p>2.3 상호접촉 여부 확인</p> <p><u>2.3.1</u> 정상사용 및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사용을 통해 어린이가 물리적으로 해당 제품과 상호접촉을 합니까?</p>	<p><input type="checkbox"/> 예 → (3.1 진행)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3.2 진행)</p>
<p>어린이제품 결정</p> <p><input type="checkbox"/> 3.1 어린이제품 (결정) <input type="checkbox"/> 3.2 일반용도 제품</p>	

04 어린이제품 확인 방법

KC마크, 인증(신고)번호 등 표시사항을 통해 어린이제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시사항은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제품 표면(상단, 하단, 후면부 등)에 있거나, 최소 포장 단위마다 있습니다.

[어린이제품 확인 방법]

The diagram illustrates four methods to identify children's products:

- 1. KC마크**
표면에 인쇄, 각인, 부착 등의 방법으로 표시
(표면에 직접 표시가 어려운 경우
최소단위 포장)
- 2. 주의/경고표시**
그래픽 심볼, 안전색,
등록된 안전표시를 삽입하여
주의/경고 문구 표시
- 3. 인증번호**
안전검사를 하고 난 후
교부 받은 안전인증번호
- 4. 사용연령 및 주의사항**
주위 글씨와 구별되는
방법으로 제품에 표시
(예 : 적색글씨, 음양각 표시,
주의 글씨보다 큰글씨)